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반려동물 영업장 내의 불법 영업, 동물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 대상동물의 범위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장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 동물생산업의 번식 목적건 동물등록 의무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 동물등록 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 동물 영업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확대 등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제1호·제2호 변경 및 제3호 신설)

-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추가
-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동물학대 등 방지를 위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5조 제3호 변경)

-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모든 기관으로 확대
- 2) (제·개정 사유) 동물실험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다. 등록대상동물(동물생산업장에서 기르는 개)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변경(안 제10조 제1항 변경)

-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생산업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시점을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영업의 허가받은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하도록 규정
 - 2) (제·개정 사유) 등록대상동물이 동물생산업자에게 기르는 개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당 개의 등록 시점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임
- 라.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안 제11조 제9호 변경)
- 1) (제·개정 주요내용)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 2) (제·개정 사유) 고장 등의 사유로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등록대상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변경신고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 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확대(안 제26조의 별표 3 개정)
-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등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장소 추가
 - * (동물생산업)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동물수입업) 사육실 및 격리실, (동물판매업) 사육실 및 격리실, (동물전시업) 전시실 및 휴식실 추가
 - 2) (제·개정 사유) 동물 관련 영업장 내의 학대 행위 예방 및 학대 발생 시 근거자료 수집을 위하여 설치 의무 장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

○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 대상 구체화

- * (기존) 동물생산업 영업장에게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변경)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시점 명확화

- * (기존)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변경) 소유권을 취득한 날(동물생산업자의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유 변경

- * (기존) 제11조 제1항 제10호 신설: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제11조 제1항 제9호 변경: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동물 등록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경과규정 부칙 신설

- * (동물등록) 동물생산업자가 개정안 시행 이전 기르고 있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에 대하여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업장 규모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시점 차등화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개”를 “개로서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법 제6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동물생산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장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개”를 “개로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제5조제3호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취득한 날”을 “취득한 날(동물생산업자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로,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4조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같은 조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및
장소: 2025년 1월 1일

별표 3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도축장: 하차시설(동물의 자연스러운 하차가 확인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계류시설(도축 전 동물을 대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기절시설로 이동하는 통로 및 방혈(放血)시설(방혈 시 동물의 의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별표 3 제1호마목(종전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1) 동물생산업: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2) 동물수입업: 사육실 및 격리실

3) 동물판매업(「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방식만으로 반려동물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

가)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 격리실,

경매실 및 준비실

나) 가) 외의 동물판매업: 사육실 및 격리실

4) 동물장묘업: 화장(火葬)시설 등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의 처리시설

별표 3 제1호바목(종전의 마목)1)부터 3)까지를 각각 2)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물전시업: 전시실 및 휴식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식별장치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아 그 영업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에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개로 한정

다)를 기르고 있는 자는 제4조제1호·제3호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도축장을 운영하는 자, 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별표 3 제1호다목3)나)의 동물판매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및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전시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각각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1. 영업장의 규모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영업장의 규모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표 3 제1호다목3)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격리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1. 영업장의 규모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영업장의 규모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u> 를 말한다.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 ----- ----- ----- <u>개</u> ----- -----.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u>개</u>	1. ----- ----- ----- <u>개</u> 로 서 <u>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u> [<u>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동물생산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장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포함한다]</u>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u>개</u>	2. ----- ----- ----- <u>개</u> 로서 <u>월령 2개월 이상인 개</u>
<신 설>	3. <u>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u>

	<u>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u>
제5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제5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신청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 ----- ----- ----- ----- 취득한 날(동물생산업자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 ----- 제4조 각 호-----

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의 소유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
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
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
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8. (생략)

9.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
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② ~ ⑧ (생략)

제3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같은
조 각 호-----

-----.
-----.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
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의 변
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6조(규제의 재검토) -----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 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2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고 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 치 대상 및 장소: 2025년 1월 1일</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620